

의안번호	2207382
의 퇴 인	박정하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계번호	24C63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 중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 부분을 삭제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제4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관람료 사용 등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안 제49조제4항)

-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목적 및 용도의 전제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 부분을 삭제할 경우 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지원목적 및 용도 완화에 따라 관람료 감면을 하고,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소유자 및 관리단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관람료 감면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사찰 65곳 (2025년 신규 1곳 포함)으로서, 관람료 감면비용에 대한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현행법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찰명	2024년 예산액	2025년 지원액(안)	비고
1	전등사	1,518,220	1,554,650	
2	용주사	56,880	58,240	
3	신륵사	354,410	362,910	
4	신흥사	4,500,360	4,608,360	
5	청평사	203,620	208,500	
6	낙산사	3,527,920	3,612,590	
7	백담사	649,960	665,550	
8	월정사	2,327,960	2,383,830	
9	삼화사	122,070	124,990	
10	구룡사	465,240	476,400	
11	법주사	1,857,120	1,901,690	
12	영국사	33,770	34,580	
13	마곡사	706,990	723,950	
14	동학사	601,140	615,560	
15	갑사	299,450	306,630	
16	신원사	95,070	97,350	
17	무량사	83,480	85,480	
18	관촉사	93,320	95,550	
19	수덕사	988,840	1,012,570	
20	직지사	391,170	400,550	
21	동화사	409,150	418,960	
22	파계사	49,350	50,530	
23	운문사	523,630	536,190	
24	용연사	19,910	20,380	
25	은혜사	189,060	193,590	
26	수도사	36,240	37,100	
27	대전사	1,370,840	1,403,740	
28	불국사	8,045,480	8,238,570	
29	석굴암	3,662,270	3,750,160	
30	분황사	177,240	181,490	
31	기림사	136,350	139,620	
32	보경사	610,060	624,700	
33	불영사	89,390	91,530	
34	해인사	938,730	961,250	
35	쌍계사	463,780	474,910	
36	옥천사	13,010	13,320	
37	범어사	182,330	186,700	

연번	사찰명	2024년 예산액	2025년 지원액(안)	비고
38	통도사	1,577,770	1,615,630	
39	내원사	241,520	247,310	
40	석남사	159,660	163,490	
41	표충사	375,130	384,130	
42	봉정사	138,200	141,510	
43	부석사	485,010	496,650	
44	금산사	387,890	397,190	
45	금당사	442,840	453,460	
46	안국사	297,350	304,480	
47	실상사	6,390	6,540	
48	백양사	744,930	762,800	
49	화엄사	1,130,820	1,157,950	
50	천은사	502,070	514,110	
51	연곡사	59,130	60,540	
52	태안사	25,360	25,960	
53	흥국사	15,010	15,370	
54	향일암	1,466,850	1,502,050	
55	송광사	425,920	436,140	
56	운주사	163,120	167,030	
57	대흥사	537,800	550,700	
58	도갑사	40,500	41,470	
59	선운사	1,545,630	1,582,720	
60	내소사	1,197,640	1,226,380	
61	내장사	1,258,170	1,288,360	
62	자재암	158,420	162,220	
63	용문사	847,050	867,370	
64	선암사	570,690	584,380	
65	도림사	-	109,190	신규
합 계		50,594,680	51,917,800	

자료: 국가유산청

-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